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
일, 문자메시지(SMS, MMS)”로 한다.

제25조의7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신설하며, 제2
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
을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
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
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
드가맹점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
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
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현황신
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
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
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
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
용카드가맹점

5.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
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
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 원
(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
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5조의7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항을 신설한다.

④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
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2회 공시하여야 한다.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p> <p>① ~ ② (생략) ③ 법 제24조제5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책정함에 있어 과도한 이용한도 책정으로 인하여 신용카드가 남용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회원 등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도를 책정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할 것</p> <p><u><단서 신설></u></p> <p>2. ~ 3.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24조의5(결제능력 심사기준 및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사항)</p> <p>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1. ----- ----- ----- ----- -----. 다만, 회원이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안내하여 줄 것을 사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p> <p>① ~ ③ (생략) ④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호에서 정</p>	<p>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p> <p>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p>

하는 기간에 따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⑤ ~ ⑥ (생략)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시행령 제6조의14 제1항에서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란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 합계를 말한다.

<신설>

-----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

-----.

1. ~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7(대형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1.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2회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합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신 설>

2. 매 반기 종료일 현재 「부가 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만 있는 경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개인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가. 매 상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서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나. 매 하반기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4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신용카드가맹점

4.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

5. 법 제64조제6호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관리하고 있

<신 설>

<신 설>

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등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 매출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3억 원(제2호의 경우에는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자료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그 이전 1년 동안의 신용카드등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 2천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에 따른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본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산정하는 경우 제25조의5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

----- 1월 31일
과 7월 31일-----
----- 2회 공시-----.

⑤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가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은 시행령 제6조의14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 설>

자신과 거래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③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의 적격 비용 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적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법 제18조의3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경제적 이익 등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

-----.
-----.

⑦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연 락 처	(02) 2156 - 9853